

문서번호	의 1330~155	기 안	전문위원	간 사	위원장
보존기간	영구	★ 김철수	김철수	12	12
보고일자	1999. 7.	협 조			

1999. 7. 14(수)

제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당초안) : 1999. 7. 1 제천시장
- 나. 당초안 상정일자 : 1999. 7. 8
- 다. 수정안 상정일자 : 1999. 7. 8(제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개정안)

- '98년 12월 개정되어 '99. 1. 1일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  
※ 지방세법 개정 (법률 제5,615호. '98. 12. 31)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82호. '98. 12. 31)
- 일부 표현상의 미비점 보완

#### 나. 수정이유

'95년 1월 1일 사군이 통합되면서 행정재정등 모든면에서 종전의 군지역이나 시지역이 통합되기 이전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함은 물론 오히려 더 혜택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 4년이 지난 현재 그 약속을 여러면에서 파기하고 있음.

주민세의 경우도 종전은 동지역 1,800원, 읍·면지역 1,000원으로 차별했던 것을 지방세법에서부터 차별조항을

없애는게 그 한예라 하겠음. 비록 법에서의 차별조항은 없었지만 문화적 행정적 수혜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지역은 시장의 재량으로 상징적으로나마 다소 차별을 두는 것이 현실의 정서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다. 주요골자(개정안)

##### ○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 조정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1,800원,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함.

##### ○ 일부 미비점 보완

균등할 주민세율 세부내용 중 일부 모호한 문구를 고쳐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라. 수정주요골자

안 제20조제1항제1호의 가목 “3,000원”으로 개정했던 안을 “동지역 3,000원, 읍·면지역 2,5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개정안대로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세법 제18조제4항으로 규정했던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당해 시군의 동지역은 종전의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도록 도·농간 차별을 두었던 규정이 '98. 12. 31일자로 삭제되어 차별의 근거가 없어져 읍·면과 동지역을 동등하게 하고,
- 같은법 제179조에서 “주민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

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어 이에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법규적 저촉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세액의 적·부문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차별화 문제 등은 시세가 시정에 이바지하는 기여도와 그 징수 비용과의 관계, 또 자치의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노력, 읍·면과 동지역간의 상호문제와 동의 농촌지역 및 읍면의 상가지역간의 관계등 행정 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승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4. 질의 답변 요지

##### 가)질의요지

- 1) 주민세의 징수방법은? (박태덕위원)
- 2) 주민세를 일괄징수 할 때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어느정도 형성해 놓고 일괄징수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태덕위원)

##### 나)답변요지 (세정과장 지선대)

- 1) 개별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하겠다.
- 2) 주민세의 액수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3,000원정도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주민세의 성격상 1년에 1번 호당 내는 회비적 성격도 사실상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이 삭제될 때 같이 일괄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상정하게 되었다.

## 5. 심사내용

### ○ 수정안발의(민경환위원)

#### • 수정안발의 사유

문화적·행정적 수혜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지역은 시장의 재량으로 주민세를 상징적으로나마 다소 차별을 두는 것이 현실의 정서와 부합되고 판단되어 주민세를 동지역은 3,000원, 그리고 읍·면 지역은 2,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수정안 표결 결과 : 찬성4명, 반대2명(출석위원 6명)

### ○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조병석위원)

주민세는 지난 73년 처음 도입된 이래 3,4차례 인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이나 징수비용에도 못따라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읍·면 주민은 여러 가지 여건이 동지역 주민들과 달라 주민세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아예 주민세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그러한 주장에는 찬성할수 없다. 대다수 주민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과 발상은 당장은 몰라도 언제나 득보단 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민세는 주민이면 누구나 내야하는 기본 의무이며 빈부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세금도 아니고 또, 문화적 혜택을 더 받고 덜 받음에 따라 내는 세금도 아니다. 제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에게는 공평히 부과하는 관등할 세금이다. 시군이 통합된지도 5년이 지났다. 읍면동 구분하지 말고 우리 모두 동등한 주민이라 생각하고

균등할 주민세는 읍면동 차등을 두어서는 않된다고 생  
각되어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제기한다.

## 6.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 7.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가. 제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나. 제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부 끝.